

증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[2003. 12. 15 규칙 제41호]

개정 2005. 8. 10 규칙 제 90호
(제명개정 포함)

일부개정 2011. 5. 27 규칙 제185호

일부개정 2015. 10. 2 규칙 제278호
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일부개정 2017. 12. 28 규칙 제329호
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8. 10, 2011. 5. 27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5. 27, 2019. 12. 26>

1. “시공기술자”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증평군에 둔 자(단,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)를 말한다.
2. “급수공사대행업자”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대행업 허가요건) ① 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갱신허가의 경우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 5. 27>

1.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이력서
3. 현장대리인 신고서(별지 제2호서식)
4.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)
5.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

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② 허가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허가기준을 구비한 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27>

제4조 삭제 <2019. 12. 26>

제5조(보증금)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표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 발생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.

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현금에 한정하여 예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한다. <개정 2011. 5. 27>

제6조(현장대리인)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27>

제7조(신고의 의무)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27>

1. 영업소 이전 및 상호 변경

2.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변경

3. 폐업 및 휴업

제8조(수리책임)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장치를 파

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제9조(시공중지 및 재시공명령)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 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.

제10조(대행업자의 책임)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가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1. 5. 27>

제11조(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)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, 자재, 그 밖의 시공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27>

제12조(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)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한다.

제13조(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)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27>

1.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2. 제3조제1항 규정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3.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<개정 2011. 5. 27>
4.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
5. 현장대리인 결원 발생 후 1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때
6. 허가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전체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7. 허가 후 3월 이내에 영업 미개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휴업한 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27>

1. 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<개정 2011. 5. 27>
2. 조잡한 시공으로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<개정 2011. 5. 27>
3. 연 5회 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

4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
5.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
6.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<개정 2011. 5. 27>

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동시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, 그해에 경고처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. <개정 2011. 5. 27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1. 5. 27>

1. 허가기간 중 전체 6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2. 허가기간 중 10회 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제정 전에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, 그 이외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③(경과조치) 이 규칙 제정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05. 8. 10 규칙 제90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5. 27 규칙 제185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2 규칙 제278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2. 28 규칙 제329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

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
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허 가 기 준

구 분	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본금	○ 개인 2,000,000원(평가액) ○ 법인 3,000,000원(불입자본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치금	1,000,000원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무실 및 창고	사무실 10㎡이상 창고 16.5㎡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화	1대이 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사용 기 구	<table><tr><th>품 명</th><th>규 격</th><th>단 위</th><th>수 량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체인블럭</td><td>1.5t이상</td><td>대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오 스 타</td><td>0.5-1인치</td><td>조</td><td>2</td><td></td></tr><tr><td>〃</td><td>0.5-2인치</td><td>조</td><td>2</td><td></td></tr><tr><td>천 공 기</td><td></td><td>대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컷 터 기</td><td>50m/m이상</td><td>대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파이프렌치</td><td>36인치</td><td>개</td><td>2</td><td></td></tr><tr><td>모타 펌프</td><td>50m/m이상</td><td>대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tr><td>다 짐 기</td><td></td><td>대</td><td>1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		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	체인블럭	1.5t이상	대	1		오 스 타	0.5-1인치	조	2		〃	0.5-2인치	조	2		천 공 기		대	1		컷 터 기	50m/m이상	대	1		파이프렌치	36인치	개	2		모타 펌프	50m/m이상	대	1		다 짐 기		대	1	
	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체인블럭	1.5t이상	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오 스 타	0.5-1인치	조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〃	0.5-2인치	조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천 공 기		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컷 터 기	50m/m이상	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파이프렌치	36인치	개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모타 펌프	50m/m이상	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 짐 기		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0. 2>

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(신규·갱신)허가신청서

소재지 :

상 호 :

대표자 성명 : 생년월일 :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|
| 1. 자본금(개인재산평가) | 원정 |
| (법인불입자본금) | 원정 |

2. 시공업 이외의 영업종목

「증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(신규·갱신)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증 평 군 수 귀하

증평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0. 2>

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

주 소 :

자격증번호 :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위 사람을 급수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상호

대표

(서명 또는 날인)

증 평 군 수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공 사 용 기 구 보 유 명 세 서

상호 :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 10. 2>

급수공사시공영업(신규·갱신) 허가증

허가번호 : 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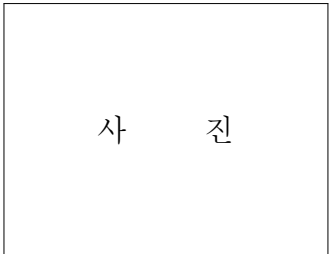
주 소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영업장소 :

상 호 :



「증평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증평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(신규·갱신)을 허가함.

· 허가기간	년	월	일부터
	년	월	일까지

년 월 일

증 평 군 수